

단설대학원의 설립 요건

강 무 섭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

□□□

1. 머리말

21 세기를 특징짓는 지식·정보화와 세계화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를 창출·축적·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지표이다. 대학은 지식과 기술 및 정보를 창출·활용하는 산실이며, 국가 경쟁력을 길러주는 전진 기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은 획일적인 체제와 규제 일변도의 학사 및 행정 관리 그리고 열악한 교육 및 연구 여건 등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 내지 못하였다.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식·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하여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대적인 대학교육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5·31 교육개혁을 통하여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대학 설립과 정원의 자율화, 대학 학사 관리 운영의 탄력화, 대학교육 및 학술 연구의 일류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방안은 교육부 또는 개별 대학들에 의하여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단설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제안되었으며, 이미 입법화되어 단설대학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단설대학원 제도 도입의 배경과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대학 설립 준칙에서 제안하고 있는 단설대학원 설립 요건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2. 단설대학원 제도의 도입 배경

앞으로 고급 전문인력의 수요는 물론, 날로 혁신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학원 수준의 재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존의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만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이미 산업체나 산업체 부설 연구소, 종합병원 등의 특수 전문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대학원을 부설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학사 학위 과정이 없이 대학원에서 일부 전공 관련 분야의 독립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사카 대학 대학원의 경제학 연구과, 공공 경제학 분야 그리고 동경 대학 대학원의 종합 이공학 분야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대학의 학부가 없는 완전한 단설대학원의 형태도 그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단설대학원은 정의상 학사 학위 과정이 없는 대학원이다. 우리나라 대학에는 학부에 전공 학사 학위 과정이 없는 전문대학원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보건대학원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평화복지대학원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현재 우리나라에도 학부 과정이 없는 독립된 단설대학원이 이미 설립되어 있는데, 그 좋은 예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부설 대학원이다.

그러나 단설대학원 또는 학사 학위 과정이 없는 대학원은 우리나라 대학원 체제에서는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아직도 학사 학위 과정 중심 교

육에 머물러 있고, 무엇보다도 대학원이라면 응당 학사 학위 과정이 있는 대학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의 상식이다. 따라서 단설대학원 혹은 학사 학위 과정이 없는 대학원을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실제 독립 또는 단설의 경우, 그 운영에서 인접 학문과의 연계, 학생 선발의 기준 설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등에서 학사 학위 과정이 없는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학원 교육이 학부 교육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이 강점일 수도 있지만, 대학원의 설치·운영을 학부 과정의 설치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 즉, 우리나라의 한정된 교수 인력과 제한된 물질 자원으로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만으로 모든 전공 영역의 고급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급증하는 대학원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대학 밖의 연구기관 등에 있는 많은 교수 인력, 정보 자료 및 시설 등은 고급 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계화·정보화 시대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단설대학원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교육부에서는 현장 중심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세계화·정보화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부 없는 별도의 단설대학원의 설립을 허용한다.”라는 조항을 교육법(제109조의3)에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교육법 시행령에 ‘단설대학원 설치 운영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3. 단설대학원의 설립 요건

단설대학원의 설치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설립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개혁위원회는 5·31 교육개혁에서 대학 설립 인가제를 대학 설립 준칙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안을 받아들여 '대학 설립 준칙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 설립 준칙의 기본 원칙, 요건과 최소 기준 그리고 준칙에 포함될 대학 현장안을 구상하였다. 대학 설립 준칙 제정위원회에서는 대학 설립 준칙의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 설립의 준칙 요건과 기준의 최소화를 통하여 대학 설립의 자율화를 추진한다. 즉,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은 최소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준칙의 요건 중 교지, 교사 등에 대한 기준은 완화하고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은 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둘째, 준칙 설정에서 계열별 구분(인문사회, 공학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계열별 광역화한다. 그러나 대학 종류별(대학, 전문대학, 개방대학, 단설대학원 등) 구분은 원칙적으로는 두지 않되 교수의 요건, 학생 규모, 수익용 기본 재산 등에 대해서는 학교 특성에 맞추어 구별한다.

셋째, 대학 설립 준칙은 대학 정원 자율화 시책 및 대학평가인정제와 연계하여 적용·운영한다. 즉, 대학 설립 준칙이 대학 정원 자율화의 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준칙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대학평가 인정을 통하여 질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한

다. 그리고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도 준칙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대학평가를 제도화하도록 한다.

넷째, 대학 설립의 자율화로 대학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자율 경쟁 체제를 확립한다.

또한 대학 설립 준칙에서는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의 최소 기본 요건만을 설정하고 설립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연구 시설, 부속 시설, 실험·실습 설비, 부속병원 등은 '대학현장'에 제시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대학 설립 준칙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교 지 : 교지는 교사의 연면적(교육 기본 시설+지원 시설)의 2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특수법인이 설립하는 단설대학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교 사(校舍) : 교사의 면적은 교육 기본 시설(강의실, 실험 실습실, 교수 연구실, 행정실)과 지원 시설(도서관, 학생회관, 대학 본부, 체육관, 강당, 전자계산소)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교사 기준은 현재 대학 설치 기준령의 100%를 적용한다(예고제의 140%에서 축소). 총 정원 1,000명의 경우 계열별 교사 면적을 학생 1인당 면적으로 산출하면 인문사회 12㎡, 자연과학 17㎡, 공학 20㎡, 예·체능 19㎡ 그리고 의학 20㎡이다.

○ 교 원 : 계열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준칙의 교원 기준으로 설정하고, 인문사회 1:30, 자연과학 1:20, 공학 1:20, 예·체능 1:20 그리고 의학 1:10으로 기준을 잡았다. 그리고 대학원의 경우 교수 대 학생 비는 단설대학원의 경우는 학사 과정의 2배, 대학과 대학원이 설치된 경우는 1.5배로 하였다. 또한 교원에는 일정 비율의 겸

임교원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익용 기본 재산: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학생 1인당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여, 학교 재정 지원 능력 확보 후 개교 또는 학생을 증원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 학교법인은 학생 1인당 등록금의 125%를 적용한 재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재산의 종류는 연간 재산 가액(부동산은 고시지가)의 1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 단설대학원의 설립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설대학원의 경우도 대학 설립 준칙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단설대학원의 설립 준칙안에서 설립 주체는 학교법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법에 의한 법인도 설립주체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단설대학원은 학부 과정이 없는 대학원 대학이기 때문에 설립 규모는 석·박사 과정을 포함하여 총 학생 정원 200명을 최소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인적·물적 조건인 설립 요건 및 기준은 설립 준칙의 원칙인 최소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설립될 단설대학원은 기존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과의 기능상의 중복보다는 이들 대학원의 기능을 보충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전공 설치 분야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정보 통신, 통상 외교, 국제 관계 및 산업디자인 분야로 단설대학원의 설치 분야

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외의 분야는 사회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설치 분야를 사전에 예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맺는 말

단설대학원 제도 도입은 기존 대학원 교육을 보완하여 국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 양성과 재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밖의 교수요원 인력과 연구 정보 자료 및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통하여 학술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에서 종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고, 대학원간의 자율 경쟁 풍토가 조성됨으로써 대학원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단설대학원 설립이 남발될 경우, 오히려 대학원 교육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소수 단설대학원을 설립·운영하고, 결과를 평가하여 앞으로 설립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강무섭/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교육행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으로 재직중이며, 교육개혁심의회 상임 전문위원과 중앙교육심의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 『한국의 고등교육정책』 등이 있고,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대학입시제도”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